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1명)

찬 성 자 : 김종무, 이광호, 이광성, 김상진,
박기재, 우형찬, 김소영, 김평남,
이태성, 김호진, 김용연, 최영주,
최정순, 박기열, 김인호, 안광석,
송아량, 유 용, 황규복, 김정환,
이영실, 노승재, 유정희, 오현정,
이병도, 장인홍, 박상구, 최 선,
김경우, 김정태, 김춘례, 김제리,
서윤기, 이은주, 이정인, 권순선,
황인구, 최기찬, 채유미, 전병주
의원(40명)

1. 제안 이유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면서 안전 대책 마련 및 시민 계도 활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내 최초의 고가 보행자 전용도로인 ‘서울로 7017’의 경우 각종 시설물들이 산재하여 보행이 불편한 구조임에 따라 서울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위 제한 사항에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포함하고, 제한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제6호 신설).

나. 제한하는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의 의무화 (안 제13조제3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13조(행위의 제한) ① -----</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 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제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표시한 안내 표지판 설치의 의무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비용 발생(안 제13조제1항 6호 및 제13조제3항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50천원

- 서울로 7017 고가 상부에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일부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물(구역 안내사인)에 새로 추가한 내용이 포함된 시트지 부착 방식에 의한 1회성(2019년) 비용 발생
- 비용추계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및 부가가치세 미포함(설치비 포함)
 - 규격: 시트지 부착방식(500 × 1000)
 - 수량: 기 설치된 7개소
 - 단가: 50,000원 [C디자인 견적가(1개 당 40,000원) + R아트 견적가(1개 당 60,000원)의 평균]
- 비용추계 산출내역
 - 수량(7개소) × 단가(50,000원) × 1회 = 350,00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분석관(주무관) 장호진

☎ 02-2180-7934

e-mail : hwarang7@seoul.go.kr